



제429회국회(정기회)
제8차 국방위원회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현역병 선발 시 여성 현역병 지원자 차별 금지〉
■ 김미애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2238호)

2025. 11.

국 방 위 원 회

전 문 위 원 서 덕 교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
I. 제안경위

1. 발 의 자 : 김미애의원 등 11인
2. 발의연월일 : 2025. 8. 19.
3. 회부연월일 : 2025. 8. 20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여성이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여 계급에 따른 지원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, 현실적으로는 각 군의 소요와 복무여건을 고려하여 장교 및 부사관으로만 선발하고 있음.

그러나 저출산 및 병역 자원 감소로 인한 현역병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, 현역병에 대한 여성의 자발적 복무 참여 요구도 증가하고 있음.

이에 병무청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지원에 의한 현역병 선발 시 현역병으로 지원한 여성을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하여 병역 자원 확보 방안을 다변화하고, 성별에 따른 복무형태의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(안 제2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).

Ⅲ. 검토의견

- 개정안은 여성이 현역병으로 지원하는 경우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해당 인원을 선발함에 있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, 국방부장관은 여성 현역병의 복무 실태 등의 사항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).

[신·구조문대비표]

현행	개정안
제20조(현역병의 모집) ① . 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0조(현역병의 모집 등) ① .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현역병을 선발하는 때에는 현역병으로 지원한 여성을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
<u><신설></u>	<u>④ 국방부장관은 여성 현역병의 복무 실태, 고충 처리 현황 및 제도 운영 성과를 매년 정기국회 개최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u>

□ 현행 「병역법」에 따르면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¹⁾하고 있어, 원칙적으로 여성이 지원에 의한 현역병(兵)으로 복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있음.

<장교 및 부사관 여군 비율 현황 >

(단위: %)

구 분	2023년			2024년			2025년 전반기		
	총계	장교	부사관	총계	장교	부사관	총계	장교	부사관
비 율	10.2	11.3	9.6	10.9	12.4	10.1	11.5	13.2	10.6

□ 개정안은 여성이 현역병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성별을 이유로 선발 과정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, 여성이 병으로 지원하여 군 복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.

□ 다만, ① 현행법상 여성이 지원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여성 지원병 제도 시행을 위한 군 시설 등 제반 여건이 미비하고 실제 여성이 현역병으로 지원한 사례가 없다는 점, ② 병역법에 별도의 규정 없이도 「대한민국 헌법」,

1) 「병역법」 제3조(병역의무)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「대한민국헌법」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.

「양성평등기본법」 등 여러 법률에 의해 성별에 의한 차별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- 한편, 개정안 제20조제4항은 국방부장관이 여성 현역병 복무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인데, 동 사항은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「병역법」보다 군인의 복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「군인사법」을 개정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보임.
- 국방부 및 병무청은 여성 지원병 제도에 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.

문 의 처
02)6788-5307